
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인권교육 사업안내

2023. 3.



보건복지부

차 례

I . 인권교육의 개요	1
II . 인권교육기관 지정 · 운영	2
III . 인권교육 실시	5
IV . 인권교육 강사 양성 · 관리	9
V . 인권교육계획 수립 및 실적 제출	10
VI . 인권교육정책자문위원회 구성 · 운영	13
VII . 지자체 역할	13
붙임 서식	15
인권교육기관의 역할	23
관련 법령	24

이 지침은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설치·운영자와 종사자의 인권 교육 실시가 2018년 4월 25일부터(장기요양기관의 경우, 2018년 9월 14일부터) 법적으로 의무화됨에 따라, 인권교육 대상시설(노인복지시설·장기요양기관), 인권교육기관, 시·도 및 시·군·구 담당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인권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는 지침입니다.

I. 인권교육 개요

1. 교육목표

- 노인인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 제고
-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설치·운영자 및 종사자의 인권 감수성 향상
-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이용자의 노인인권 보호와 개선

2. 법적근거

- **노인복지시설**: 노인복지법 제6조의3,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1조의2,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조의3, 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
- **장기요양기관**: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,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4조의2,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의2, 장기요양기관 대상 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

3. 교육대상자

- ※ 「노인복지법」 제31조에 따른 **노인복지시설 중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경로당 및 노인교실을 제외한 시설의 설치·운영자와 종사자**
- ※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31조에 따라 설치된 **장기요양기관***의 **설치·운영자와 종사자**
 -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부칙(제15881호) 제4조2항 : 종전의 제32조에 따라 설치·신고된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제31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지정된 장기요양기관으로 본다.

- **노인복지시설(경로당·노인교실 제외) 및 장기요양기관 설치·운영자**
 - 노인복지시설(경로당·노인교실 제외) 및 장기요양기관의 설치·운영자라 함은 허가증(설치허가증, 신고필증, 지정서 등) 상의 대표자를 말함(시설장 포함)
 - 설치·운영자 중에서 인권교육 신규강사 양성 기초교육 또는 강사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는 당해 연도 인권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함
- **노인복지시설(경로당·노인교실 제외)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**
 - 「노인복지법」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(경로당·노인교실 제외) 및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전 직원
 - * 정규직, 계약직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시설에 소속된 직원 모두 대상임

- 종사자 중에서 인권교육 신규강사 양성 기초교육 또는 강사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는 당해 연도 인권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함
- 출산·육아·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휴직할 경우 다음연도 교육으로 대체하여 이수할 수 있음(증빙서 첨부)

4. 주요 교육내용

- 노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령·제도 및 국내외 동향
- 노인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기관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
- 노인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신고 요령 및 절차 등

II. 인권교육기관 지정·운영

1. 인권교육기관의 종류

- 「노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1조의3제3항 및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」 제27조의2제4항 각호의 기관·법인 또는 단체

1. 「국가인권위원회법」에 따른 **국가인권위원회**
2. 「노인복지법」 제39조의5에 따른 **노인보호전문기관**
3. 「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」에 따른 **한국보건복지인재원**
4. 그 밖에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추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·법인 또는 단체

2. 인권교육기관 지정

- **당연지정 인권교육기관:** ①국가인권위원회, ②노인보호전문기관, ③한국보건복지인재원

* 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고시에 따라 당연지정

- **추가지정 인권교육기관:**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추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·법인 또는 단체

<지정절차>

-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시(교육 수요대비 당연지정 인권교육기관 강사 등이 부족한 경우 등), 인권교육기관 추가지정 공고를 실시할 수 있음
- 추가지정 공고에 따라, 인권교육기관을 지정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고시 별지 제3호 서식의 인권교육기관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
- 노인복지 교육의 전문성, 기관의 안정성, 인권교육 계획의 충실성 등 전반적인 교육 수행능력을 고려하여 지정
- 보건복지부장관은 추가로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한 경우, 고시 별지 제4호 서식의 인권교육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함

※ 인권교육기관 추가지정 공고(필요시) → 신청서 접수 및 심사 → 인권교육기관 지정

3. 인권교육기관의 역할

구분		역할
노인보호 전문기관	중앙	· 교육 커리큘럼 및 콘텐츠 개발 · 노인보호전문기관 인권강사양성 및 보수 교육과정 운영 · 노인보호전문기관 인권교육 실적 취합 및 보고
	지역	· 시·군·구 집합교육 운영(대면, 비대면) · 인권교육기관에서 양성된 인권강사 운영(방문 교육)
국가인권위원회		· 인권교육 방향 설정, 커리큘럼 및 콘텐츠 개발 · 인권강사양성(필요시) 및 보수 교육과정 운영 · 인권교육기관에서 양성된 인권강사 보수교육 협력 운영
한국보건복지인재원		· 교육 커리큘럼 공동개발 및 콘텐츠 개발 · 인권강사양성 및 보수 교육과정 운영 · 인권교육기관에서 양성된 인권강사 운영(방문 교육) · 인터넷 교육 운영

4. 인권교육기관 지정 취소 및 폐지 등

○ 인권교육기관 업무 정지 또는 지정 취소

- 보건복지부장관은 인권교육기관이 아래 표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면,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정지할 수 있음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행정처분 기준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
가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	노인복지법 제6조의3제4항제1호,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제4항제1호	지정취소		
나. 법 제6조의3제5항 및 이 규칙 제1조의3제3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	노인복지법 제6조의3제4항제2호,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제4항제2호	업무정지 3개월	업무정지 6개월	지정취소
다. 인권교육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	노인복지법 제6조의3제4항제3호,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제4항제3호	업무정지 3개월	업무정지 6개월	지정취소

○ **인권교육기관 변경신고**(고시 제9조제1항제5호)

-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(당연지정 인권교육기관 제외)가 기관의 장, 소재지를 변경한 때에는 고시 별지 제5호 서식의 변경신고서와 첨부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

※ 첨부서류

1. 기관의 장 변경의 경우: 사유서(법인인 경우 기관의 장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) 및 변경된 기관의 장의 이력서
2. 소재지 변경의 경우: 사유서(법인인 경우 소재지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 사본) 및 변경된 시설의 평면도

○ **인권교육기관 폐지**(고시 제11조)

-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인권교육기관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의 인권교육기관 폐지 신청서와 첨부서류(인권교육기관 지정서 원본)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

Ⅲ. 인권교육 실시

1. 교육시간

- 매년 4시간 이상(인터넷 교육의 경우, 6시간 이상)

2. 교육방법

- 1) **집합 교육(대면/비대면)**: 인권교육기관이 연간 인권교육계획에 따라 진행
- 2) **방문 교육**: 인권교육 강사가 노인복지시설·장기요양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진행
- 3) **인터넷 교육**: 인권교육기관의 교육 사이트를 활용하여 진행
 - * 집합교육, 방문교육 등 대면교육으로 실시할 경우, 강의식 교육, 토론 등 교육대상자가 직접 참여하는 교육으로 운영할 수 있음

3. 교육 신청방법

※ 교육대상자가 인권교육기관별 교육 일정 등을 참고하여 희망하는 인권교육기관의 교육을 선택하여 신청

1) **집합 교육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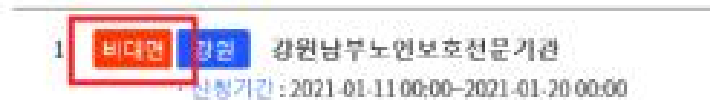
○ 노인보호전문기관

- ※ 노인복지시설·장기요양기관은 교육대상자의 교육수요를 받아 일괄(단체) 신청 및 개별 신청 가능
- 매년 초 인권교육기관(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)이 시·도와 협의하여 집합교육 운영일정 등을 포함한 인권교육 계획을 수립하고, 시·군·구를 통해 노인복지시설·장기요양기관에 집합 교육 운영일정, 신청방법 등 안내
-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또는 노인인권 집합교육 신청 플랫폼을 통해 매월 노인보호전문기관 교육 일정 확인 가능
- 시설(기관)의 장은 교육 운영일정을 직원에게 안내하고, 희망하는 교육을 아래 방법에 따라 신청하여 수강함
 - ①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인권 집합교육신청 플랫폼(noinedu.or.kr) 접속
 - ② 노인인권교육 신청 → 교육지역 선택 → 수강신청

- * 근무하는 시설이 소속된 지역 선택 후, 해당 지역에 개설된 교육으로 신청
- ③ 수료증 출력 및 소속기관 제출(교육참석 7일 후 교육생 본인 혹은 단체 신청 대표자가 신청조회 및 이수증발급 → (단체·개별)발급 및 조회 → 정보입력 → 교육 만족도 조사 → 수료증 발급)
- * 교육일정은 월초 공지사항을 통해 공지 및 노인인권교육 신청 → ‘전체’ 클릭 시 개설된 전체 교육 확인 가능

※ 코로나바이러스19로 인한 비대면 집합교육 한시적 운영

- ① 노인인권 집합교육 신청 플랫폼(noinedu.or.kr)를 통해 개설된 ‘비대면’ 교육 신청



- * 비대면 교육의 경우 개설 교육 기관 앞에 ‘비대면’ 으로 표시됨
- ② 교육을 신청한 수강생에 한해 개인별 화상회의 프로그램 접속을 위한 교육 ID, 비밀번호 사전 발송
- ③ 부여받은 교육 ID, 비밀번호 입력하여 교육장 입장, 수강
- ④ 교육생 ID(소속_이름) 및 카메라 화면 확인으로 수료여부 확인(1회/시간당), 중도이탈*, 카메라 화면을 띄우지 않은 수강생은 미수료 처리
- * 원칙상 교육 중 퇴실은 미수료이나 하드웨어적 문제로 퇴실된 경우 교육 ID 및 비밀번호 입력 후 재입장, 채팅방에 사유 작성
- ※ PC, 모바일, 태블릿 등 카메라 기능이 탑재된 기기만 수강 가능

○ 한국보건복지인재원

※ 교육대상 ‘기관단위’로 신청(교육시작 2주전까지 신청 가능)

※ 교육인원 최소 20~50명* 범위 안에서 신청 가능

*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교육인원 변동 가능

- ① ‘한국보건복지인재원 보건복지배움인’ 홈페이지(edu.kohi.or.kr) 접속
- ② 회원가입 후 로그인 실시
- ③ 교육과정 검색: ‘찾아가는 노인인권교육’ 입력 → 일정 확인 후 희망 교육 수강신청

* 교육 개설 시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홈페이지 공지 및 노인복지 관련 협회, 기초자치단체에 홍보예정

*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상기 계획 및 교육계획은 변동 가능

2) 방문 교육

※ 방문 교육의 경우, 인권교육기관에서 인권교육에 필요한 비용(강사비 등)을 교육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으며, 비용은 교육인원, 교육장소 등에 따라 인권교육기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

○ 노인보호전문기관

※ 노인복지시설·장기요양기관에서 교육대상자의 교육수요를 받아 일괄 신청

- 시설(집합교육에 참여하지 못했거나, 노인학대로 판정된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)의 장은 고시 별지 제1호 서식의 인권교육 신청서를 인권교육기관(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)에 제출

- 지자체는 노인학대 판정받은 시설에 대해 인권교육(방문) 대상임을 통보

* 시설에서 집합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교육대상자 등을 파악한 후 일괄 신청

* 인권교육기관에서는 교육대상인원이 20명 이하일 경우, 2개 이상의 인권교육 대상 시설을 연계하여 방문교육 실시 가능

※ 교육 실시 기관의 사정에 의해 방문교육 진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, 신청 전 관할 노인보호전문기관(1577-1389)에 문의 요망

○ 한국보건복지인재원

※ 노인복지시설·장기요양기관과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일정 협의 하여 교육 진행

* 교육 개설 시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홈페이지 공지 및 노인복지 관련 협회, 기초자치단체에 홍보예정

3) 인터넷 교육

○ 한국보건복지인재원

※ 교육대상자 개인이 개별적으로 신청

- ①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의무교육 홈페이지(in.kohi.or.kr) 접속
- ② 회원가입 후 로그인 실시
 - * 회원가입 시 휴대폰 및 I-PIN을 통한 본인 인증 필요
- ③ 하단의 ‘노인인권’ 클릭 → 교육과정명 ‘[노인인권 한걸음 더 다가가다] 2023년 노인인권 의무교육’ 클릭 → 수강신청 클릭
- ④ 신청자 정보 확인 후 [수강신청] 클릭 → 수강내역 확인 후 [확인] 클릭
- ⑤ 중앙의 [학습하기/수료증] 메뉴에서 학습하고자 하는 교육과정의 [학습하기] 클릭
- ⑥ 수강 시 주의사항 [동의] 클릭, 차시별로 학습 실시
- ⑦ 수료증 출력 및 소속기관 제출([학습하기/수료증] 메뉴에서 수료증 출력)
 - * 수료기준: 진도율 100%
 - ** 12월 초~중순 경 교육 종료 예정이므로, 가급적 상반기 내 수료 요망

4. 교육 이수증 발급

○ 교육 유형별 이수증 발급 방법

- 집합교육

- * 노인보호전문기관 : 노인인권 집합교육 신청 플랫폼(noinedu.or.kr)에서 출력(단체, 개인)
- * 한국보건복지인재원 : 홈페이지(www.edu.kohi.or.kr)에서 개별적으로 출력

- 방문교육

- 인권교육기관에서 인권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이수증(고시 별지 제2호 서식)을 발급

- 인터넷 교육

- 인터넷 교육에서 출력한 수료증을 이수증으로 갈음함

※ 인권교육기관은 교육 이수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요청할 경우, 이수증을 재발급할 수 있음

※ 교육 이수증 재발급 사유

1. 해당 연도 교육 이수한 사람들 중 이직·휴직·기타사유로 인하여 이전 직장에서도 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
2. 기타 인권교육기관이 인정한 경우

- 인권교육기관은 교육 미이수자, 참여 태도 불량자, 교육 진행 방해자 등 교육진행의 어려움을 초래한 자에 대하여 교육 중간에 귀가시키거나, 교육 이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

IV. 인권교육 강사 양성·관리

1. 인권교육 강사 자격 기준

- 「노인복지법」 제31조 및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31조에 따른 시설(기관)의 장으로 인권교육 강사활동에 적합한 사람
- 노인복지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
- 보건·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인권교육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
- 지정된 인권교육기관에서 인권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인권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
-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심리학·간호학·사회복지학·사회사업학, 법학, 심리학 또는 보건학을 가르치는 강사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

2. 인권교육 강사 양성

- 인권교육 자격 기준을 갖춘 사람 중 인권교육 강사로 활동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인권교육기관의 인권교육 강사양성과정을 이수하여야 함
 - 인권교육 강사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만이 인권교육 강사로 인정되며, 인권교육기관의 인권교육 강사로 등록되어 공식적인 인권교육 강사의

역할(집합·방문 교육)을 수행하여야 함

3. 인권교육 강사 보수교육

- 인권교육 강사는 인권교육기관의 보수교육을 매년 6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함
- 단, 인권교육 강사가 출산·육아·질병으로 인한 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, 인권교육기관의 장이 사유의 타당성 등을 판단하여 1년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음

4. 인권교육 강사 유지조건

- 인권교육 강사는 매년 6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, 취득 후 만 2년 동안 강의실적이 없는 경우 강사 자격을 상실하게 됨

V. 인권교육계획 수립 및 실적 제출

1. 인권교육계획 수립·안내

- 인권교육계획 수립
- 보건복지부는 매년 인권교육 사업안내를 수립하여 시·도에 통지하고, 시·도에서는 시·군·구 및 인권교육기관(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)과 협의하여 각 시·도의 연간 인권교육계획을 수립(매년 1월 초)
- 계획 수립 시(1월 초), 교육 장소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, 공지 예정시기와 공지방법 등을 기재하여 계획 수립
- * 예시: 교육 장소는 2월경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인권 집합교육신청 플랫폼(noinedu.or.kr)에 공지할 예정

※ 연간 인권교육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

- 교육대상자 예상인원, 연간 교육 일정표 및 교육 유형(대면/비대면 교육), 교육 장소(대면 집합 교육의 경우), 기타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등

○ 인권교육계획 안내

- 시·도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통지한 인권교육 사업안내와 시·도 연간

인권교육 계획을 시·군·구를 통해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에 안내(매년 1월까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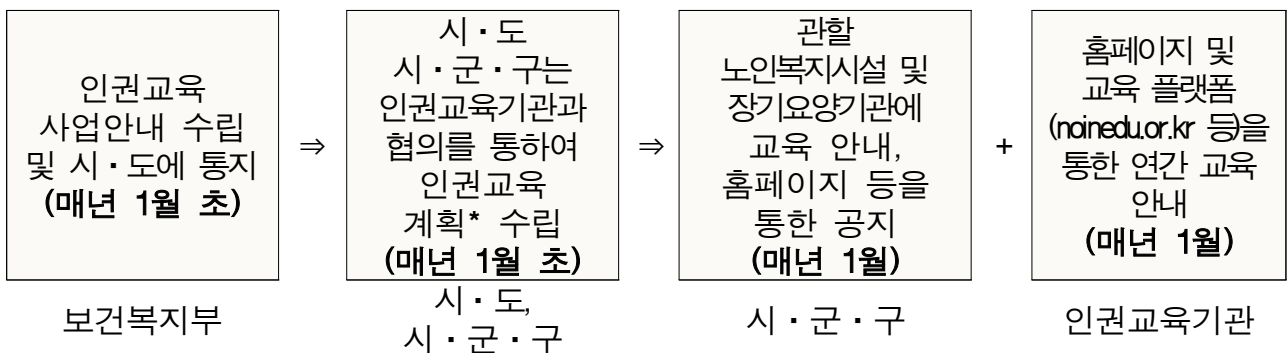
- 인권교육기관은 인권교육계획을 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

○ 인권교육계획 변경

- 연간 인권교육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, 연간 교육계획을 즉시 수정하고 인권교육기관 홈페이지 등에 재게시하며, 관할지역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에 재안내하여야 함

※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으로 인하여 집합(대면)·방문 교육의 경우 연기 또는 취소 될 수 있으며, 불가피하게 집합교육 진행 시 교육장 내 체온계 등 비치, 참석자 마스크 착용, 손소독제 비치, 예방행동수칙 부착 등의 조치 선행 필수

<인권교육 계획 수립 및 통지 절차>



* 노인보호전문기관(인권교육기관)의 교육일정 등은 지역마다 각기 달라질 수 있음

5. 인권교육 실적 제출

○ 제출기한: 2024년 3월 10일 까지 2023년 실적 제출

○ 제출대상: 2023년 12월 31일 기준, 근무 중인 시설 설치·운영자 및 종사자

* 단, 당해연도 12월 중 입사자의 경우(12.1~)다음연도 교육으로 대체하여 이수 할 수 있음(관련 서류(근로계약서, 재직증명서등) 첨부)

예시) 2023.12.1. 입사자 → 교육 대상자 제외 (2024년 교육대상자)

*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익년도 추가 연장(2월까지) 실적 인정 폐지(2022년 실적부터 적용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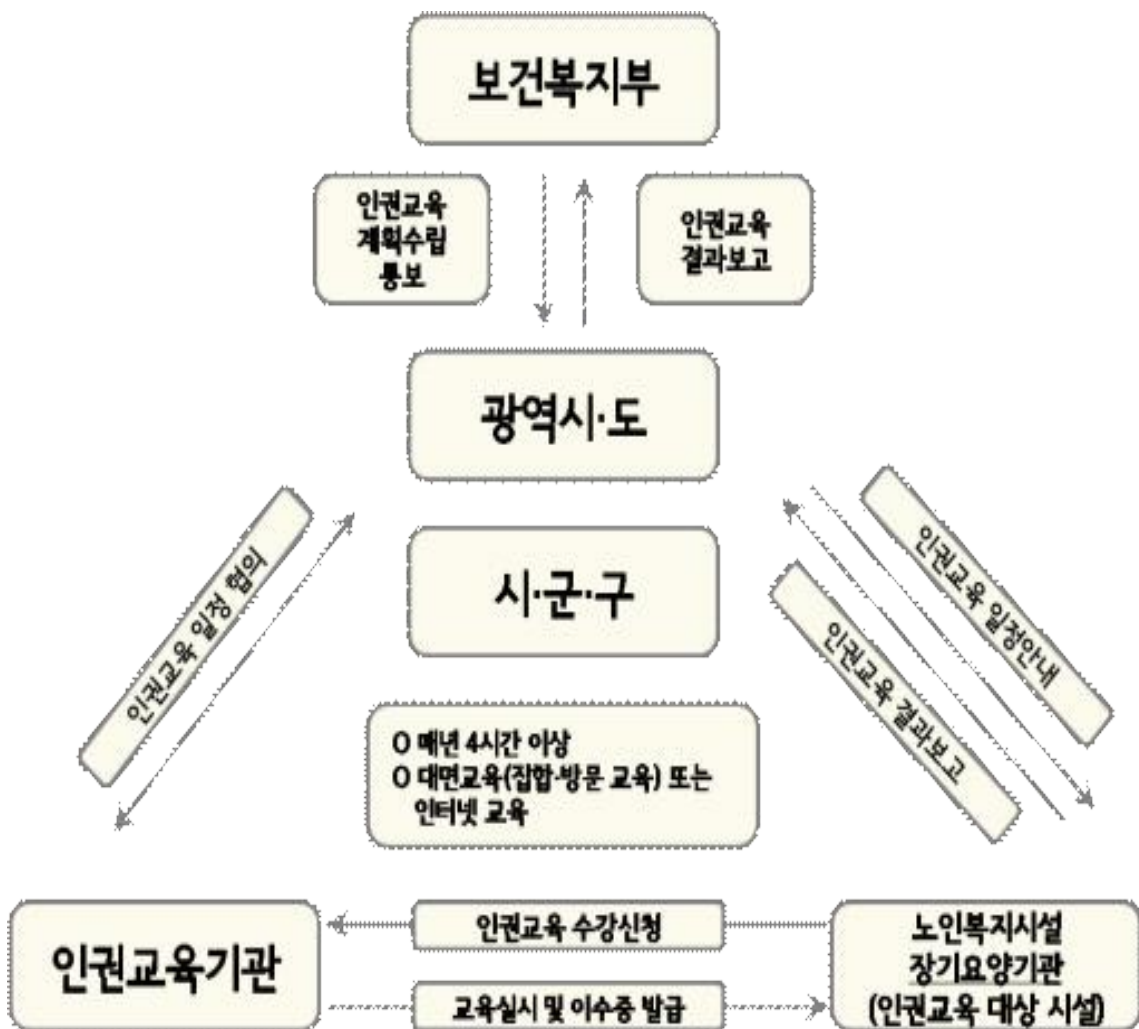
○ 전달체계: 노인복지시설·장기요양기관→시·군·구(시설 담당부서)→
시·도(노인보호사업 담당부서)→보건복지부(노인정책과, 요양보험운영과)

* 제출경로, 제출·취합부서 등은 지자체 실정에 맞게 조정 가능

○ 제출서식

- 노인복지시설·장기요양기관에서 시·군·구로 제출 시: 붙임 1 서식
- 시·군·구에서 시·도로, 시·도에서 복지부로 제출 시: 붙임 2 서식
- * 교육대상자의 교육 이수증(수료증)은 노인복지시설·장기요양기관에서 자체 보관

<인권교육 운영체계 흐름도>



6. 인권교육 경비의 징수

- 지정된 인권교육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인권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교육 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음
- 인권교육기관이 교육대상자로 부터 징수할 수 있는 교육비용의 범위
 - 집합교육: 강사비, 교재제작비, 장소 임차료(혹은 사용료)
 - 방문교육: 강사비, 교재제작비, 장소 임차료(혹은 사용료), 교통비
 - 집합교육의 경우, 인권교육기관에서는 시·도 또는 시·군·구의 협조를 받아 인권교육 장소를 마련하고, 강사와 교재를 지원할 수 있음

VI. 인권교육정책자문위원회 구성·운영

- 보건복지부는 인권교육의 운영 관리를 위해 인권교육기관의 추천을 받아 인권교육정책자문위원회를 8인 내외로 구성할 수 있음
 - 인권교육기관에서 추천받은 사람 중 선출을 통해 인권교육정책자문위원회 대표를 선출할 수 있음
- 인권교육정책자문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함

※ 의결사항

1. 인권교육기관 운영, 평가에 관한 사항
2. 인권교육 내용 및 인권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
3. 인권교육 강사 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인권교육 운영을 위해 자문이 필요한 사항

VII. 지자체 역할

- 시·도(노인복지 담당부서) 역할
 - 교육실적 제출(시·군·구에서 제출한 실적을 취합하여 복지부에 제출)
 - 매년 초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인권교육계획(집합 교육 운영일정 등) 수립
 - 연간 계획에 따라 교육이 원활하게 실시되고 있는지 각 지역노인보호

전문기관 교육 실시 모니터링

- 집합 교육 장소 협조

○ 시·군·구(노인복지 담당부서) 역할

- 교육실적 제출(시설에서 제출한 실적을 취합하여 시·도에 제출)
- 매년 초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인권교육계획(집합 교육 운영일정 등) 수립
- 관할지역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에 교육 안내
- 집합 교육 장소 협조

○ 시·도 또는 시·군·구에서는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점검 시 인권 교육 이수 여부를 점검할 수 있으며, 이때,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보관 중인 교육대상자의 교육 이수증(수료증)을 제출하여야 함

※ 인권교육 담당부서

- 노인복지시설: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(044-202-3452, 3453)
- 장기요양기관: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(044-202-3512, 3517)

붙임 1 **인권교육 실적 제출서식 (시설·기관→시·군·구)**

연번	시도	시군구	시설유형	시설명	교육대상자	교육이수 여부 (이수 또는 미이수)	교육방법	교육기관 (1.국가인권위원회, 2.노인보호전문기관, 3.한국보건복지인재원)
예시	서울시	종로구	노인복지관	○○노인복지관	홍길동	이수	집합교육	1
	경기도	이천	방문목욕	00장기요양기관	심 청	이수	인터넷	3

붙임 2 인권교육 실적 제출서식 (시·군·구→시·도→복지부)

연 번	시도	시군구	시설유형	시설명	교육 대상자 수 (명)	교육이수 현황				교육 미이수 인원(명)
						전체 교육이수 인원(명)	교육별 이수현황			
							집합교육 (명)	방문 교육 (명)	인터넷 교육(명)	
예/ 시	서울시	종로구	노인복지관	○○노인복지관	110	10	5	1	4	100
	경기도	이천	방문목욕	00장기요양기관	10	7	2	2	3	3

제 호

인권교육 이수증

성 명 :

생년월일 :

위 사람은 노인복지법 제6조의3(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)
에 따른 인권교육을 이수하였기에 증서를 수여함

년 월 일

○ ○ 인권교육기관장 (직인)

인권교육기관 지정 신청서			처리기간
			30일
① 기관명			
② 소재지			
③ 신청인 성명		④ 전화번호	
「인권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」에 따라 위와 같이 인권교육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신청인 (서명 또는 인) 보건복지부장관 귀하			
첨부서류 1. 법인인 경우 비영리법인의 정관 사본 1부 2. 인권교육기관 사업계획서 1부 3. 인권교육기관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명서류			
			수수료 없음

제 호

인권교육기관 지정서

- 기관명:
- 소재지:
- 법인명(사업자등록번호):
- 기관의 장 성명(생년월일):
- 주소:
- 지정조건:

「인권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」에 따라 위와 같이 인권교육기관 지정서를 교부합니다.

년 월 일

보건복지부장관

직인

고시 별지 제5호 서식(제9조 관련)

인권교육기관 []기관의 장 []소재지 변경신고서			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			
접수번호	접수일	발급일	처리기간 7일
신고인	성명(대표자)		법인명
	소재지(주소)		전화번호
기관	명칭		
	기관의 장 성명		
	변경 연월일		
변경사항	기관의 장	성명	생년월일
		주소	
	소재지	현재	
		변경 후	
변경사유			
「인권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」에 따라 위와 같이 인권교육기관의 ([]기관의 장 []소재지) 변경을 신고합니다. 년 월 일 신고인 (서명 또는 인) 보건복지부장관 귀하			
첨부서류	1. 인권교육기관 지정서 1부 2. 변경사항에 따른 서류 가. 기관의 장 변경의 경우: 사유서(법인인 경우에는 기관의 장에 대한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을 말합니다) 및 변경된 기관의 장의 이력서 각 1부 나. 소재지 변경의 경우: 사유서(법인인 경우에는 소재지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을 말합니다) 및 변경된 시설의 평면도 각 1부		수수료 없음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고시 별표 1 인권교육기관의 역할(제10조 관련)

*추후 고시 개정 시 해당 내용 반영 예정

구분		역할
노인보호 전문기관	중앙	· 교육 커리큘럼 및 콘텐츠 개발 · 노인보호전문기관 인권강사양성 및 보수 교육 과정 운영 · 노인보호전문기관 인권교육 실적 취합 및 보고
	지역	· 시·군·구 집합교육 운영(대면, 비대면) · 인권교육기관에서 양성된 인권강사 운영(방문 교육)
국가인권위원회		· 인권교육 방향 설정, 커리큘럼 및 콘텐츠 개발 · 인권강사양성(필요시) 및 보수 교육과정 운영 · 인권교육기관에서 양성된 인권강사 보수교육 협력 운영
한국보건복지인재원		· 교육 커리큘럼 공동개발 및 콘텐츠 개발 · 인권강사양성 및 보수 교육과정 운영 · 인권교육기관에서 양성된 인권강사 운영(방문 교육) · 인터넷 교육 운영

○ 노인복지시설

노인복지법 제6조의3(인권교육) ① 제31조의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인권에 관한 교육(이하 이 조에서 "인권교육"이라 한다)을 받아야 한다.

② 제31조의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노인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권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인권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인권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, 지정을 받은 인권교육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인권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교육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.

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인권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2. 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
3. 인권교육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권교육의 대상·내용·방법, 제3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및 제4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·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1조의2(노인복지시설 중 인권교육 대상 시설) 법 제6조의3제1항 및 제2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"이란 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(이하 "노인복지시설"이라 한다) 중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경로당 및 노인교실을 제외한 시설을 말한다.

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조의3(인권교육) ①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인권에 관한 교육(이하 "인권교육"이라 한다)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노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령·제도 및 국내외 동향
2. 노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
3. 노인복지시설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신고 요령 및 절차

4. 그 밖에 노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

② 「노인복지법 시행령」(이하 "령"이라 한다) 제11조의2에 따른 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대면 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을 통하여 매년 4시간 이상의 인권교육을 받아야 한다.

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·법인 또는 단체를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1. 「국가인권위원회법」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

2. 법 제39조의5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

3. 「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」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원

4. 그 밖에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추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·법인 또는 단체

④ 법 제6조의3제4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·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권교육의 실시 방법,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절차 및 교육 경비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○ 장기요양기관
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(인권교육) ① 장기요양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설치·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인권에 관한 교육(이하 이 조에서 "인권교육"이라 한다)을 받아야 한다.

② 장기요양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설치·운영하는 자는 해당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권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인권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인권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, 지정을 받은 인권교육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인권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교육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.

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인권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
2. 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
3. 인권교육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권교육의 대상·내용·방법, 제3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및 제4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·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4조의2(장기요양기관 중 인권교육 대상 기관)
 법 제35조의3제1항 및 제2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"이란 각각 제10조제1호나목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말한다.
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의2(인권교육) ①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인권에 관한 교육(이하 "인권교육"이라 한다)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노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령·제도 및 국내외 동향
2. 장기요양기관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
3. 장기요양기관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신고 요령 및 절차
4. 그 밖에 노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
- ② 법 제35조의3제1항 및 영 제14조의2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설치·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대면 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을 통하여 매년 4시간 이상의 인권교육을 받아야 한다.
- ③ 법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설치·운영하는 자는 해당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기관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신고 요령 및 절차를 교육할 수 있다.
-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5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·법인 또는 단체를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.
 1. 「국가인권위원회법」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
 2. 「노인복지법」 제39조의5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
 3. 「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」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원
 4. 그 밖에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추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·법인 또는 단체
- ⑤ 법 제35조의3제4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.
-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권교육의 실시 방법,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절차 및 교육 경비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